
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의 인력 및 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(안 제7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